

SAMPLE

우선 심사 필요 자료 예시
(로켓출원/우선심사시 필요)



MARKHADA

I.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

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 개시 시기, 상표사용 내역(상표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 개시예정시기, 상표사용 예정내용)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구분	증빙 자료
상표사용 사실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(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)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, 팸플렛,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, 팸플렛,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)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	①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, 팸플렛,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II.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(명칭), 주소(거주지), 사용과 관계된 상품 등 제3자의 상표사용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구분	증빙 자료
제3자에게 경고한 경우	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제3자에게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	소제기(계속)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(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)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, 팸플릿,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(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, 팸플릿,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) ③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위의 증거 자료들은 실제 로켓출원 혹은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컨설턴트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